

## [별표3]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

### ■ 부처지정학습 대상

-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훈련기관(농식품인재개발원) 교육과정
- 인사혁신처 주관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) 교육과정
- 본부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주관·운영 및 승인·추천·지정한 교육

### ■ 교육 방법

- 교육훈련기관 교육, 이러닝, 블렌디드교육, 직장교육, 원격교육, 그 외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교육

### ■ 대상 교육훈련

-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, 전문교육과정
- 시행령 제30조,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
-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(인문소양 등의 내용은 가급적 제외)

### ■ 대상 분야

- 인재개발 담당부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직가치, 국정철학 및 주요 국정과제 교육 (국가관, 공직관, 윤리관,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,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, 시책교육, 공직자의 의무, 복무 등)
  - 직무역량 향상교육
    - ① 리더십, 의사소통,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
    - ② 인사, 조직, 예산, 법제, 통계, 계약, 홍보, 정보화 등 공통 직무역량
  - 특수직무역량 향상교육(부서별,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)
    - ①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정책·업무 관련 전문교육
    - ② 담당업무 관련 자기계발 교육 등
- ※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승인 후 부서별 직장교육 및 워크숍,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

### ■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

- 대상: 기본교육, 국외 장·단기 위탁교육훈련, 국내 위탁교육훈련 등
- 제한: 이수년도 기관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  
(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)